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0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8일
발 의 자 : 이승로, 유찬종 의원(2명)
찬 성 자 : 박준희, 남창진, 강구덕, 김기대, 김희걸, 남재경, 우창윤, 양준욱, 김광수(도봉), 우형찬 의원(10명)

1. 제안이유

기존 시가지로 토지·구획정리완료가 되지 않은 지역은 토지면적 협소, 맹지,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가 많아 개별건축이 어려우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건축협정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규정의 “지방단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을 토지·구획정리완료가 되지 않은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7조제1항제2호(구 위원회 심의사항)의 심의의결을 받은 토지로 규정함.

가. 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의 규정에 정한 토지보다 적은 경우
나. 법 제2조(정의)제1항제11호(도로)의 규정에 정한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경우
다. 기존 시가지로 토지가 세장형 또는 부정형토지인 경우
라. 하나의 토지가 각 호에 부적합하나 인접한 토지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1 건축협정을 신설한다.

제4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1(건축협정의 체결)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규정의 “지방단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토지·구획정리완료가 되지 않은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1항제2호(구 위원회 심의사항)의 심의의결을 받은 토지의 경우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의 규정에 정한 토지보다 적은 경우
2. 법 제2조(정의)제1항제11호(도로)의 규정에 정한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경우
3. 기존 시가지로 토지가 세장형 또는 부정형토지인 경우
4. 하나의 토지가 각 호에 부적합하나 인접한 토지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장의1 건축협정** 제43조의1(건축협정의 체결)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규정의 “지방단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토지·구획정리 완료가 되지 않은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1항제2호(구 위원회 심의사항)의 심의의결을 받은 토지의 경우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의 규정에 정한 토지보다 적은 경우 2. 법 제2조(정의)제1항제11호(도로)의 규정에 정한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경우 3. 기존 시가지로 토지가 세장형 또는 부정형토지인 경우 4. 하나의 토지가 각 호에 부적합하나 인접한 토지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이승로 의원